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 Revision of the system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establishing a Runoff Reduction Plan

주진걸\*, 박무종\*\*  
Jin Gul Joo, Moo Jong Park

### 요 지

자연재해대책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을 고시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제도 변화, 수립기준 고시 이후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수립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세부 수립기준의 항목을 검토하고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목표를 목표홍수량의 안전한 통수로 변경하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하시설을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도의 목적 변화를 반영하여 침투시설의 의무 배분량을 삭제하고, 목표연도 홍수량 개념을 삭제하였다. 또한, 대상 강우량을 50년 빈도 강우량, 방재성능목표강우량, 기왕최대강우량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지자체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용어** : 우수유출저감대책, 저류시설, 침투시설, 목표홍수량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1년도 대한민국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1M3E9A1103525)

\* 정회원 · 동신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부교수 · E-mail : jgjoo@dsu.ac.kr

\*\* 정회원 · 한서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 E-mail : mjpark@hanseo.ac.kr